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자 원 의 절 약 과 재 활 용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업무의 권한을 위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14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법 제41조제2항제1호”로, “제6호의2”를 “제6호의2, 제6호의3(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으로, “제2항제2호·제3호”를 “제3항제2호·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가목 중 “법 제41조제1항제9호”를 “법 제41조제2항제9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41조제1항제16호”를 “법 제41조제2항제16호”로 한다.

나. 법 제41조제2항제15호

제48조제3항제11호 중 “폐기물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2. 법 제41조제2항제1호----- ----- 제6호의2, 제6호의3(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 제3항제2호·제3호-----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5. ----- -----
가. 법 제41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가. 법 제41조제2항제9호--- ----- ----- -----

한정 한다) <u>나. 법 제41조제1항제15호</u> 다. <u>법 제41조제1항제16호</u>[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10의2. (생략) 11. 제14조에 따른 수입업자에 대한 <u>폐기물부담금</u>의 정산 및 반환 11의2. ~ 20. (생략) ④·⑤ (생략)	----- <u>나. 법 제41조제2항제15호</u> 다. <u>법 제41조제2항제16호</u>----- ----- ----- ----- ----- ----- ----- ③ ----- ----- -----. 1. ~ 10의2. (현행과 같음) 11. ----- -- <u>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u>----- -- 11의2. ~ 20.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44) 201 - 7386